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려는 제품 또는 판매되는 제품 중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변경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미 평가확인을 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현행과 같은 포장재이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자체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가 어려울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험분석,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외 평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포장재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6개월 이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장재 등급표시 연장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공단은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표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5(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내용,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명령안을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선 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선 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품목의 개선명세서

2. 이행세부계획서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6(개선기간의 연장 요청) ①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선기간 연장 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기간 연장 요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개선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총 개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7(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고,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및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급(다만, 제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분담금의 산정)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감경, 할증, 차등화 등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의 할증의 경우는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공동운영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분담금의 할증, 차등화 등을 통해 추가 분담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동운영위원회는 분담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1. 포장재별 재활용 비용
2.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포장재 회수·재활용 체계 안정화에 필요한 비용
4. 그 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

제26조에 제1의2호 및 제1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 및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평가 결과 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조제1항제2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제27조의3의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의3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를 제2호로, 제1호의2를 제2호의2로, 제2호를 제2호의3으로,

제2호의2를 제2호의4로 하고, 제1호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19호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려는 제품 또는 판매되는 제품 중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변경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u></p>

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미 평가확인을 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현행과 같은 포장재이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제출받은 평가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가 어려울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험분석,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외 평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제3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포장재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6개월 이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장재 등급표시 연장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공단은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표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5(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신 설>

개선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내용,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명령안을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선 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선 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품목의 개선명세서

<신 설>

<신 설>

2. 이행세부계획서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6(개선기간의 연장 요청)

①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선기간 연장 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기간 연장 요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개선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총 개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7(제조·수입·판매 중단명

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고, 중단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및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에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3. (생략)

4. <신 설>

<신 설>

1.~3. (현행과 같음)

4.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급(다만, 제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의3(분담금의 산정) ① 공동운영위원회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감경, 할증, 차등화 등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의 할증의 경우는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공동운영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분담금의 할증, 차등화 등을 통해 추가 분담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동운영위원회는 분담금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 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 1의2. (신설)
- 1의3. (신설)
- 2.~4. (생략)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1. 포장재별 재활용 비용
2.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포장재 회수·재활용 체계 안정화에 필요한 비용
4. 그 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 4에 따른 개선명령 및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의3.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평가 결과 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4. (현행과 같음)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재활용의무생산자(비용기재 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나. (생략)
다. (신설)
 - 3.~7. (생략)
- ② · ③ (생략)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비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 1의2. (신설)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1. (현행과 같음)
 2. 재활용의무생산자(비용기재 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 3.~7.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3조의3에 따른 포장재

2.~7. (생략)	<u>의 재질·구조 등급에 관한 사항</u> 2.~7. (현행과 같음)
------------	--

<별 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① 포장재명	② 제품명	
	제조일자	③ 자체평가 등급	
평가결과	평가항목	④ 재질·구조 평가기준	⑤ 세부평가 등급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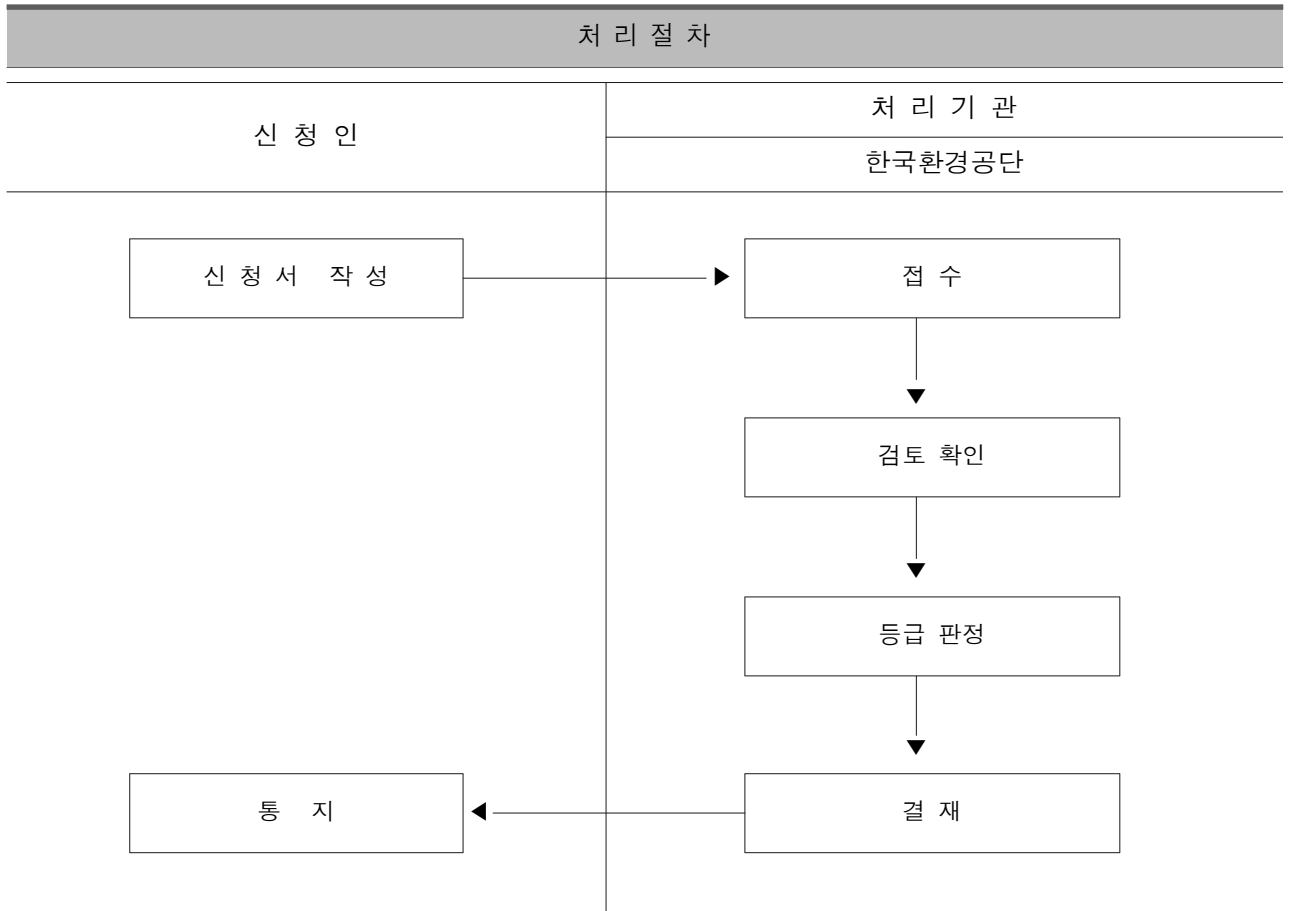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1부 2.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1부(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포장재명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종이팩, 유리병)
- 제품명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등이 동일한 제품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 제품명과 수량을 기재합니다. (예: 00 등 00종)
- 자체평가 등급은 ②에 따라 구분한 동일한 포장재별 재질·구조의 평가등급을 기재합니다. (예: 재활용 최우수/재활용 우수/재활용 보통/재활용 어려움) ※ 몸체, 라벨 등 모두 재활용 용이함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 용이함으로 평가
- 재질·구조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작성합니다. (예 : 몸체 - 투명필름 코팅·차단재 구조)
- 세부평가 등급은 ④가 해당하는 각각의 재활용등급을 기재합니다.(예: 몸체 - 재활용 용이함, 라벨 - 재활용 어려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확인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포장재명	제품명
	제 조 일 자	자체 평가 등급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검토 결과

평가항목	재질 · 구조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확인 등급
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① 포장재명	② 제품명	제조일자
	③ 자체평가 등급	④ 평가확인 등급	⑤ 평가 확인번호
이 의 신 청 내 용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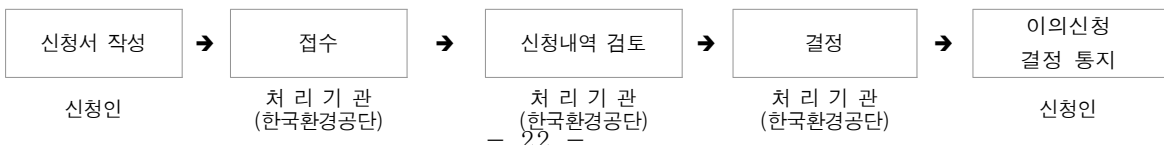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포장재 재질·구조 세부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① ~ ④ [별지 제1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⑤ 평가 확인번호는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별지 제1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포장재 등급표시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평가 확인번호	당초 표시 신고기한	연장신청 기한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등급표시 연장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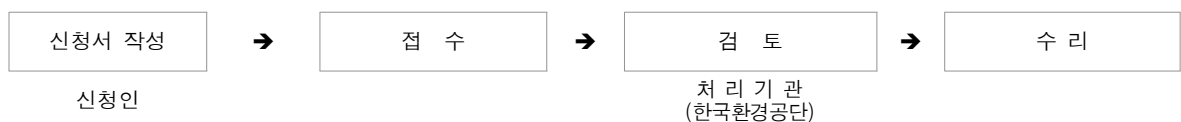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처 리 절 차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안 통지서
 제조·수입·판매 중단

수명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제품	재질·구조	제품명
	제조일자	
	위반사항	
명령내용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개선할 것을 명령할 예정이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상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령할 예정이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명령안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 장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명령번호 제 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서**
 제조·수입·판매 중단

수명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제품	재질·구조	제품명	제조일자
	위반사항		

명령내용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대상제품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니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년 월 일 제 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대상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령합니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3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또는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명령번호 제 호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선명령 이행계획

	재질·구조	제품명	이행 방법	이행 완료 일자	비고
이행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취급품목의 개선명세서 1부 2. 이행세부계획서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① 명령번호는 개선명령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제 출 인

처 리 기 관

환 경 부

계 획 서 작 성

접 수

검 토
(적정여부 확인)

승 인 통 지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

명령번호 제 호

개선기간 연장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당초 이행 완료일	이행 완료 예정일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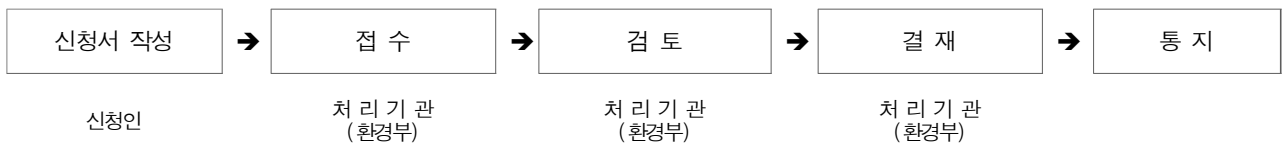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명					
구 분	상 품 명(규격)	제조일자	평가번호 (신고일자)	재질·구조 평가등급	비 고
자사 브랜드	계				
작성 요령	<p>관리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3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재질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p>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7381 (044) 201-7389